

#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·관리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# 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

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!

오봉수 의원입니다.

지난 4월 6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·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추진 사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위해 1회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과,

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개정하는 한편, 현재까지 한번도 조직·운영되지 않은 청계천추진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삭제하려는 것입니다.

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